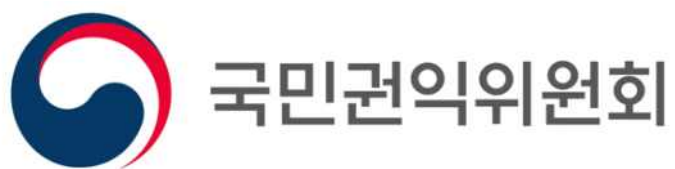


의 결



국 민 권 의 위 원 회

의 결

의안번호 제2020 - 439호

의 안 명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

대상기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의 결 일 2020. 9. 21.

주 문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 권고안을 별지와 같이 「부패방지 및 국민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규정에 따라 법무부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등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장에게 권고한다.

이 유

별지와 같다.

이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2020년 9월 21일

위 원 권 태 성

위 원 김 기 표

위 원 김 태 응

위 원 김 의 환

위 원 강 재 영

위 원 정 정 미

위 원 오 완 호

위 원 이 근 동

위 원 박 홍 규

위 원 임 혜 자

위 원 임 성 문

위 원 방 이 엽

위 원 손 난 주

[별 지]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의 불합리 개선

2020. 9.



국민권익위원회

|| 목 차 ||

I . 추진배경	1
II . 일반현황	2
III .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1. 1차, 2차 등으로 나뉘어진 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 통합 징수 개선 ·	4
2.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 ·	8
3.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의 객관성 확보	12
4. 국가기술자격 응시를 위한 경력증명 시 입증자 확인제도 개선 ..	14
5. 온라인서비스 이용 시 불필요한 동일 서류 중복 제출 제한 ·	16
IV . 조치사항 및 기한	18

붙임 : 국가전문자격 현황

I. 추진배경

❖ 추진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 과제선정 : 국민신문고 민원

□ 추진배경

- 국가자격은 산업관련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 자격인 ‘국가기술자격’과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인 ‘국가전문자격’으로 구분

※ 국가기술자격은 기술사·기능장 등 530개, 국가전문자격은 변호사·의사 등 175개

- 국민신문고 등에 접수된 민원 중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개선과제 발굴

- 일부 국가전문자격시험의 경우 1차시험 미통과자는 2차시험 응시 기회가 없음에도 2차시험 비용까지 부담하는 통합 응시수수료 징수

▶ 필기시험에 떨어지면 실기 시험 응시조차 하지 못하는 데 시험 응시료는 필기와 실기 비용을 한꺼번에 받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음. (‘19. 9월 국민신문고 민원)
▶ 1차 불합격자들이 2차 시험에 대한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음. 1차 합격률이 낮으므로 상당수 1차 불합격자들이 합격자들의 2차 시험 비용을 대납하는 실정임. (‘19. 7월 국민신문고 민원)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담당자 재량에 따른 자의적 판단 우려
- 「국가기술자격법」상 입증자*의 개인정보 수집 관련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휴대전화·주소·근무처 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경력증명서로 관련 경력을 증명해야 하나, 사업장 폐업 등 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동종업계 제3자인 입증자의 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 이에 국가자격시험 응시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응시자의 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 추진경과

- 실태조사(~’20. 7월) ⇨ 개선방안 마련(~’20. 7월말) ⇨ 관계기관 의견 조희 및 협의(~’20. 9월 초)

II. 현황

□ 자격제도 개요

- (정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자격기본법」 제2조)
- (유형)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인 '국가자격'과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인 '민간자격'으로 구분
 - 국가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자격기본법」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국가전문자격으로 구분

구분	국가기술자격	국가전문자격
근거	「국가기술자격법」	「자격기본법」 및 개별법률
개념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유형	■ 산업 관련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 자격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운영	■ 전문서비스 분야 자격 ■ 「변호사법」, 「의료법」 등 개별법에 따라 운영
시행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등	소관 부처,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종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530개 (2018.12월 기준)	변호사, 의사, 간호사 등 175개 (2020. 6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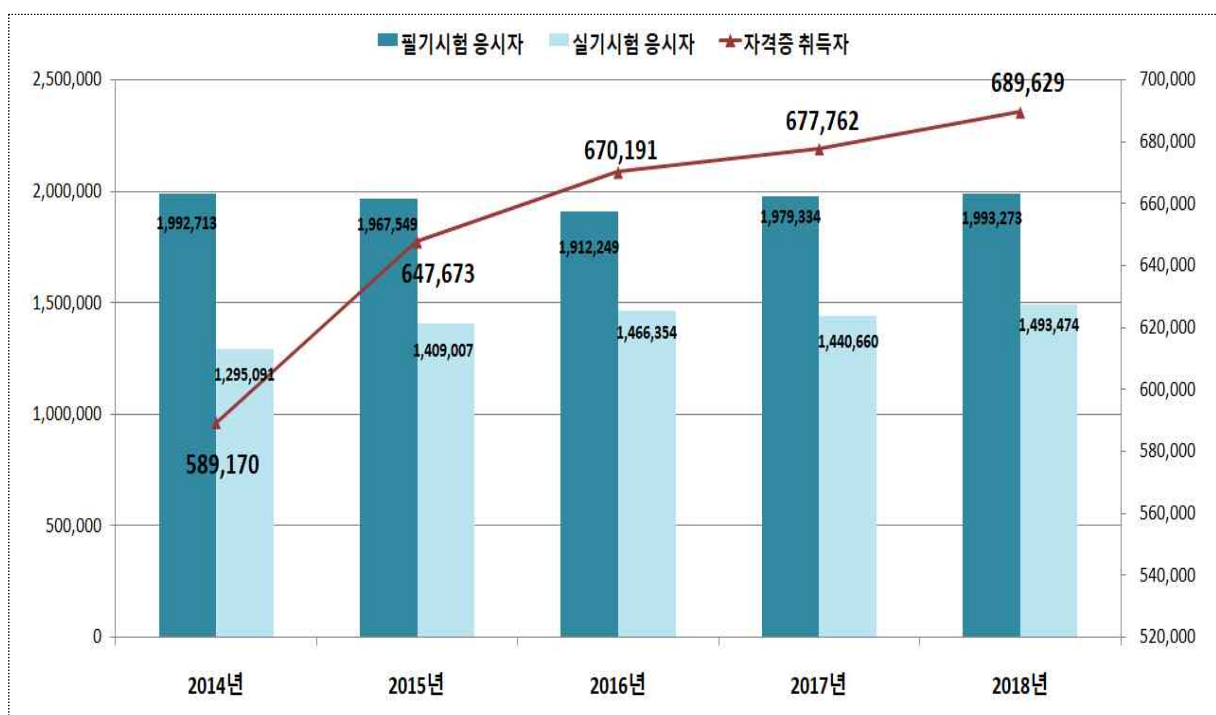
□ 국가기술자격

- (개 요) 국가자격 중 산업과 관련이 있는 기술·기능 및 서비스 분야의 자격으로 검정형과 과정평가형*으로 구분

* 과정평가형: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편성·운영되는 지정 교육·훈련과정 이수 후 내부·외부평가를 통해 합격기준을 충족한 경우 취득하는 국가기술자격

-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482개 자격), 대한상공회의소(15개 자격),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6개 자격), 기타(17개 자격)

- (자격종류)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5개 등으로 구분되며, 2018년 12월 기준 530개 자격
- (응시현황) '18년 말 기준 필기시험 응시자는 약 199만 명이며, 실기시험 응시자는 약 149만 명
- ※ '18년 말 기준 필기시험 접수자는 약 249만 명, 실기시험 접수자는 169만 명
- (취득현황) '18년 말 기준 자격증취득자는 약 69만 명이며, 지난 5년간('14년~'18년) 자격취득자는 꾸준히 증가추세



□ 국가전문자격

- (개 요) 국가자격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제외한 자격으로 주로 전문서비스 분야(의료, 법률 등)의 자격
- (시행기관) 소관부처,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 다수 기관
- (자격종류) 변호사, 의사, 간호사 등 2020년 6월 기준 175개 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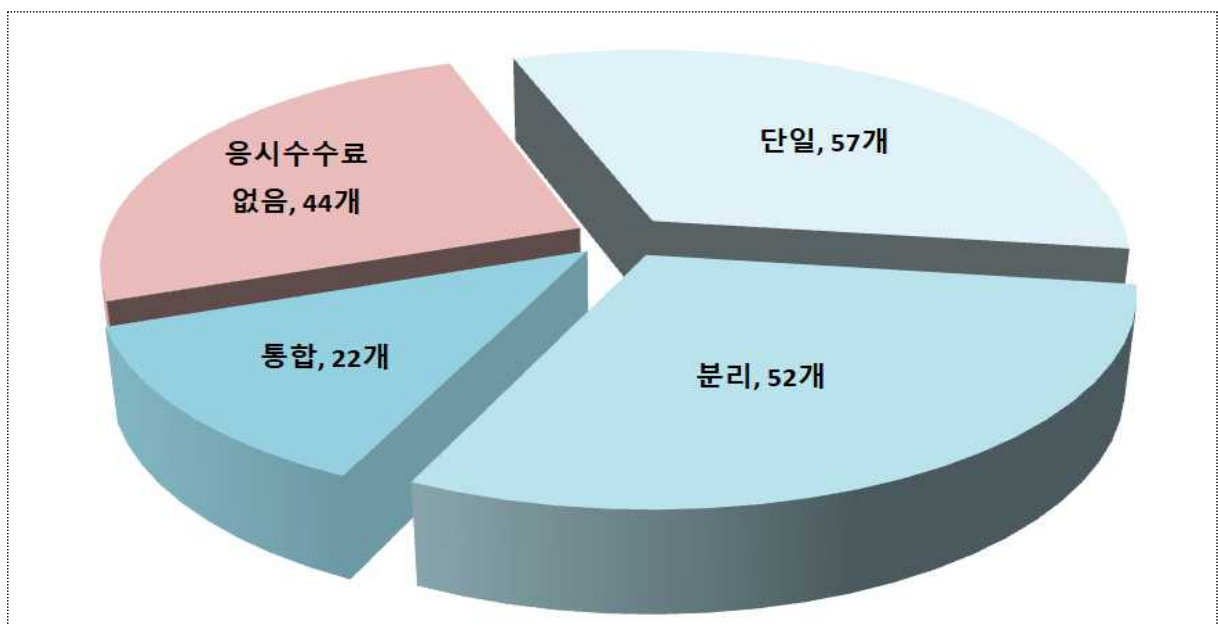
* 2020년 6월 중앙행정기관 대상 국가전문자격시험 관련 실태조사 결과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1차, 2차 등으로 나누어진 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 통합 징수 개선

□ 현황

- '20년 6월 기준 국가전문자격 175개 중 44개는 무시험검정으로 응시수수료가 없으며, 131개 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 납부 필요
 - ※ 응시수수료는 자격시험별로 상이하며 최소 5,000원(도선사, 의료관리자)부터 최대 1,750,000원(전문의) 사이임
- 응시수수료 징수방법은 단일·분리·통합으로 구분되며, 57개 자격은 단일, 52개 자격은 분리, 22개 자격은 통합 징수
 - (단일) 1, 2차 구분 없이 한차례 시험으로 이루어져 한 번의 응시수수료 징수
 - (분리) 1, 2차 등 차수 구분이 있는 시험 중 1차, 2차 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구분하여 차수별로 따로 징수
 - (통합) 1, 2차 등 차수 구분이 있는 시험 중 1차, 2차 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징수



□ 문제점

- 국가전문자격 중 감정평가사·세무사·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등 22개 자격인 경우 1, 2차(필기 2번 또는 필기·실기 등) 등 차수별 구분이 되어있음에도 응시수수료를 한꺼번에 통합하여 징수

《 감정평가사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4조(감정평가사시험) ① 감정평가사 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며,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이루어진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응시수수료) ① 법 제 14조제5항 전단에 따른 수수료(이하 "응시수수료"라 한다)는 4만원으로 하며,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 세무사 》

- 「세무사법」 제5조(세무사자격시험) ① 세무사 자격시험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실시하는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으로 한다.
- 「세무사법 시행령」 제6조(수수료) ①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응시수수료를 내야 한다.
- 「세무사법 시행규칙」 제4조(응시수수료) 영 제6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3만원을 말한다.

《 한국어능력교육검정시험 》

-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실시) ⑨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응시 수수료, 환불, 그 밖에 한국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문화체육관광부 고시)」
 1. 응시수수료 납부 가. 응시 수수료(필기 및 면접시험) : 50,000원

- 1차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응시자는 2차 시험 응시 기회가 없음에도 2차 시험에 대한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 발생
- 세무사, 관세사, 법무사, 도선사 등 자격시험은 1차 합격률이 30%에 미치지 않음에도 통합 응시수수료 부과

« 통합응시수수료 부과 국가전문자격시험 현황 »

연 번	소관부처	자격명	통합 응시수수료	합격률('19년말 기준)	
				1차	2차
1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20,000원	31.6%	50.0%
2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조종사면허	15,000원	23.3%	50.3%
3	기획재정부 (국세청)	세무사	30,000원	29.0%	13.8%
4	기획재정부 (관세청)	관세사	20,000원	29.9%	8.9%
5	법원행정처	법무사	10,000원	14.8%	20.8%
6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20,000원	59.0%	65.6%
7	문화체육관광부	호텔관리사	20,000 원	76.5%	58.3%
8	문화체육관광부	호텔경영사	20,000 원	33.3%	0.0%
9	문화체육관광부	국내여행안내사	20,000원	39.6%	73.9%
10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서비스사	20,000원	74.6%	85.1%
11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50,000원	39.9%	83.9%
12	보건복지부	치과의사전문기자격	400,000원	94.6%	93.7%
13	보건복지부	한의사전문기자격	550,000원	99.2%	98.5%
14	보건복지부	전문의자격	550,000원~ 1,750,000원	98.5%	97.5%
15	보건복지부	의지·보조기기사	135,000원	44.0%	100.0%
16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40,000원	44.3%	15.0%
17	해양수산부	도선사	5,000원	10.3%	100.0%
18	해양수산부	감정사	20,000원	47.2%	57.6%
19	해양수산부	검량사	20,000원	45.0%	82.5%
20	해양수산부	검수사	20,000원	62.6%	53.4%
21	경찰청	경비지도사	28,000원	52.1%	8.8%
22	소방청	소방안전교육사	30,000원	67.3%	72.0%

- 이에 따라 1차 시험 미통과자가 2차 시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부당하니 응시수수료를 환불해달라는 민원도 지속 발생

-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은 1차 필기, 2차 면접으로 구분이 있음에도 수수료는 한 번에 일괄 부과(5만원)하고 있음. 1차 시험 불합격자는 2차 시험 응시 대상이 아님에도 2차 시험에 대한 수수료까지 내야 함. 심지어 1차 시험의 합격률이 극히 낮은 상황이므로 상당수의 1차 시험 불합격자들이 합격자들의 2차 시험 응시수수료를 대납하고 있는 실정임. ('19. 7. 국민신문고 민원, 문화체육관광부)
- 감정평가사 시험 접수 시 1, 2차 동차 접수로 인해 응시료를 4만원 결제했음. 1차 불합격으로 2차 시험을 응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2차 시험에 대한 응시 수수료를 환불해 주시기 바람. ('20. 1. 국민신문고 민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필기시험에 떨어지면 실기시험에 응시조차 못하는 데 시험 응시료는 필기와 실기에 대한 비용을 한꺼번에 받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음. 필기 불합격자에게 실기 시험 비용에 대해 환불해주거나 처음부터 두 단계로 나누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함. ('19. 9. 국민신문고 민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개선방안

- 1, 2차 등 차수별로 시험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응시수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지 않고 차수별로 구분하여 징수

※ 다만 1차 시험 합격률이 매우 높아 대다수 응시생이 2차 시험에 응시하는 등 분리 징수의 실익이 낮은 경우, 1차 시험 미통과자에게 2차 시험 비용 환불을 조건으로 통합 징수 유지 가능

⇒ 해당 자격시험별 응시수수료관련 법령 등 규정 개정

개선(안) 예시
《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 · 「산업안전보건법」 제166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2. 제143조에 따른 지도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 고시)」 5. 산업안전지도사 및 산업위생지도사 시험 응시 수수료 <u>가. 제1차 시험: 55,000원</u> <u>나. 제2차 시험(면접시험 포함): 75,000원</u>

2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

□ 현황

- 국가전문자격시험 응시수수료 납부 후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는 경우 100%, 접수기간 이후 시험 시행일 전에 취소하는 경우 50~60% 환불

《 가맹거래사 》

- 「가맹거래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응시수수료 반환) ① 영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 시행일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 또한 시험 당일 본인의 사고 또는 직계가족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할 경우에도 대부분 자격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 50~100% 환불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 사후 환불제도 »

환불대상	환불금액
수험자의 배우자, 수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응시 수수료의 50%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은 자	
격리대상자로 판정되어 격리기간에 시험일이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국가 위기 단계로 시험일에 휴가, 외출 등이 금지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자	

« 대한상공회의소 시행 국가자격시험 사후 환불제도 »

환불대상	환불금액
직계가족(부모, 형제, 자매, (외)조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의 사망	응시수수료의 100%
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	
불가항력의 천재지변으로 시험응시가 불가능한 경우 <천재지변의 인정> - 대한상의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특정 지역의 천재지변 - 도서지역 기상악화에 따른 여객선 운항 불가 - 관할 상공회의소 검정부서장이 인정하는 천재지변으로 대한상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군 방어준비태세 3단계 이상 발령 시 또는 비상근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외출이 금지된 경우	

□ 문제점

- '20년 6월 기준 응시수수료가 있는 131개 국가전문자격시험 중 38개 국가전문자격시험은 사후 환불제도가 미비하거나 전무
- 직계가족의 사망, 본인의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불가피하게 시험에 응시하지 못함에도 응시수수료 일부도 환불받지 못해 타 자격시험과 형평성 문제 발생
 - 변호사, 전문의, 전문간호사 등 자격시험은 응시수수료가 20만 원 이상으로 고가임에도 사후 환불 불가

« 사후 환불제도가 없는 국가전문자격시험 현황 »

연번	소관부처	자격명	응시수수료
1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100,000원
2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20,000원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15,000원
4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취급감독자면허	20,000원
5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20,000원
6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조종사면허	15,000원
7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원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20,000원

연번	소관부처	자격명	응시수수료	
8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원료물질취급자면허	15,000원	
9	법무부	변호사	200,000원	
10	법원행정처	법무사	10,000원	
11	문화체육관광부	무대예술전문인	28,000원	
12	문화체육관광부	국외여행인솔자	교육기관 재량	
13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	20,000원	
14	농림축산식품부	말조련사	100,000원	
15	농림축산식품부	장제사	100,000원	
16	농림축산식품부	재활승마지도사	100,000원	
17	보건복지부	치과의사전문일자격	400,000원	
18	보건복지부	전문의	550,000원~ 1,750,000원	
19	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	600,000원	
20	국토교통부	건축사	100,000원	
21	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10,000원	
22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157,000원	
23	해양수산부	도선사	5,000원	
24	해양수산부	항해사 및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 1, 2급	30,000원	
25	해양수산부	항해사 및 기관사, 운항사, 통신사 3, 4급	14,000원	
26	해양수산부	항해사 및 기관사 5, 6급	13,000원	
27	해양수산부	소형선박조종사	10,000원	
28	해양수산부	전자기관사	14,000원	
29	해양수산부	수면비행선박조종사	14,000원	
30	해양수산부	의료관리자	5,000원	
31	경찰청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31,000원	
32	경찰청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원	31,000원	
33	경찰청	자동차 운전면허	33,000원~ 47,000원	
34	산림청	나무의사	67,000원	
35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35,000원
			1~3급	10,000원
36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58,000원	
37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30,000원	
38	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100,000원	

□ 개선방안

-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사후 환불제도 도입

⇒ 해당 자격시험별 응시수수료 환불관련 법령, 시행계획, 공고문 등에 반영

개선(안) 예시	
「국가전문자격관리운영지침」 제82조(수수료 환불) ① 수수료 환불에 관해서는 자격별 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자격별 관련법령에 환불규정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1. ~ 3. (생략)	
4. <u>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모·(외)조부모·형제·자매, 배우자, 자녀가 시험일로부터 7일 전까지 사망</u> 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5. <u>본인의 사고 및 질병으로 입원</u> (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의료기관의 입원확인서 첨부)	
5-2. <u>국가가 인정하는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발생</u> 시 국가(공공기관 포함)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확정 판정을 받거나, 격리대상자로 판정(격리기간에 시험일 포함)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국가(공공기관) 및 의료기관 발급한 확인서 첨부)	
5-3. 북한의 포격도발 등 심각한 <u>국가 위기단계로 휴가, 외출 등이 금지</u> 되어(금지기간에 시험일이 포함) <u>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군인 및 군무원 수험자</u> 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중대장 이상이 발급한 확인서 첨부)	
5-4. <u>예견할 수 없는 기후상황</u> 으로 본인의 거주지에서 시험장까지의 대중교통 수단이 두절되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자가 시험일 이후 30일까지 환불을 신청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경찰서 확인서 등 첨부)	

□ 현황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응시자격을 갖추었는지 서류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가 통과된 자에 한해서만 시험 응시 가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수험원서 등) ①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기술자격 검정 수험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과정평가형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과정평가형 수험원서를 주무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술자격의 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영 제14조제7항에서 정한 해당 응시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증명서류"라 한다)를 지정된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하고, 증명서류 중 경력증명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재직기간, 소속, 직위 및 담당업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힌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 응시자격 심사 기준일 »

구 분	응시자격 기준일
필기시험 대상자	필기시험일
필기시험이 없는 경우	실기 또는 면접시험 수험원서 마감일

□ 문제점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지역본부·시험별로 2인이 수행(응시자격 담당자 1명, 확인자 1명)하고 있는 실정으로,
 - 경력 인정여부 등 응시자격 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고 교차 확인제도가 미비하여 담당자 재량에 따른 자의적 판단 우려

- **경력 인정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업무의 객관성·일관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고 심사담당자에게도 큰 부담으로 작용**
- ※ 최근 3년간 응시자격 서류심사 관련 한국산업인력공단 내부감사 지적 사례는 4건이며, 주요 내용은 △응시자격 서류 확인 시 확인 작업 소홀, △사업주 서명이 누락된 폐업사실확인서 인정, △전체 근무경력이 누락된 사실 확인서 인정 등임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서류심사 업무매뉴얼’에는 서류심사 중 객관적인 판단이 곤란할 때에 본부 검정관리심의위원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실제 활용하는 사례는 극히 드문 상황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서류심사 업무매뉴얼 》

II. 응시자격서류심사 업무처리 방법

5. 응시자격 서류심사 시 유의사항

5-2. 응시자격 서류심사 시 유의사항(총괄)

라. 서류심사에 있어 객관적인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검정관리심의위원회(본부)를 소집하여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결정토록 하고, 동 위원회에서도 극히 판단하기가 곤란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결과 및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그 결정에 따라 처리

- 또한 응시자격 서류 심사에서 **응시자격 미달로 판단된 경우 심사결과 불복관련 재심의 등 이의신청 절차 또한 부재**
- ※ 다만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응시자가 자격 미달 판단 사유에 대해 질의한 경우에만해 본부 담당자가 내용을 확인하여 유선 등으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

□ 개선방안

- 직무분야별 주요 업무내용 및 서류심사 프로세스 수립 등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 응시자격 서류심사에서 **자격 미달로 판단된 경우 심사결과에 불복한 수험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마련**
-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서류심사 업무매뉴얼」 개정

□ 현황

-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관련 경력에 대한 증명을 받아야 하며, 사업주가 발급한 경력증명서 제출이 원칙
- 다만 사업장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동종업계 제3자인 입증자가 사실확인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가능

사 실 확 인 서

수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휴대전화)	
근무직장명	직위	제직기간	담당업무내용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본 사실확인서는 (자격명 :) 국가자격시험에 필요한 경력입증임을 인지하고 이 증명에 허위, 위조 등 사실과 다를 때에는 형사처벌 (봉사문서위조, 변조 등)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명심하고 아래와 같이 입증합니다.

입증인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휴대전화)	본인과의 관계
주 소	
근 무 처	직 위

■ 입증인 : 객관적으로 수험자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동일 사업장 또는 직종에서 근무하는 자 등)

■ 위 사실확인서의 진위확인과정에서 자료보관 등을 위해 추가서류(입증인의 인간관계명서, 공증확인 등)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경력확인불가·허위작성 등이 발견되면 반례되거나 관련법에 의거하여 고발조치 될 수 있음

첨 부 : 입증인의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글.

사실확인서 입증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수 집 목 적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응시자격의 증명
수 집 근 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33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수 집 항 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근무처, 직위
이 용 기 간	수집일로부터 3년간

■ 입증인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수험자의 경력사항이 입증되지 않아 응시자격서류심사가 거부 될 수 있습니다.

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함
☐ 동의하지 않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 사 장 귀하

□ 문제점

- 「국가기술자격법」 상 입증자의 주민등록번호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개인정보 수집관련 근거규정 미비하며, 사실확인서 상 '입증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관련 안내도 미흡
 - 또한 입증자의 휴대전화·주소·근무처 등으로도 개인 식별이 가능함에도 명확한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까지 수집하는 것은 과도
- ※ 인우보증의 경우 절차상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 큰데 반해 신빙성은 담보할 수 없어 「부동산등기법」 등 타 법에서도 폐지되는 추세

- 입증자에게 사실확인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를 작성해달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민원도 지속 제기

※ 사실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 뿐 아니라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형사처벌 감수 서약이 포함되어 있어 응시자·입증자 모두 부담

- 국가기술자격 응시를 위해서는 경력 등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때 **입증자의 신상정보와 입증자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도록 되어있음. 현재 금융권에서도 지양하고 있는 **연대보증과 동일**하다고 생각함. 입증자에게 차로 30분이 넘는 거리의 주민센터까지 가서 서류를 발급받아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비효율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생각함. *(‘20. 4. 국민신문고 민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식품기사 시험을 응시하고 싶는데 **제 경력을 증명할 사람의 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해오라고 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라는 것이 인감의 효력과 동일하기 때문에 누구 하나 쉽게 확인서를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나였어도 누군가 부탁하면 꺼려질 것 같음. 4대 보험 확인으로 갈음 했으면 좋겠음. *(‘20. 2. 국민신문고 민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실확인서를 입증인에게 겨우 받아서 제출했는데 정작 공단에서는 4대 보험 및 자격득실 내역을 확인하여 자격이 안 된다고 함. 월급 받은 통장 입금 내역까지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건 또 입증이 안 된다고 하니 너무 억울함. *(‘19. 1. 국민신문고 민원, 한국산업인력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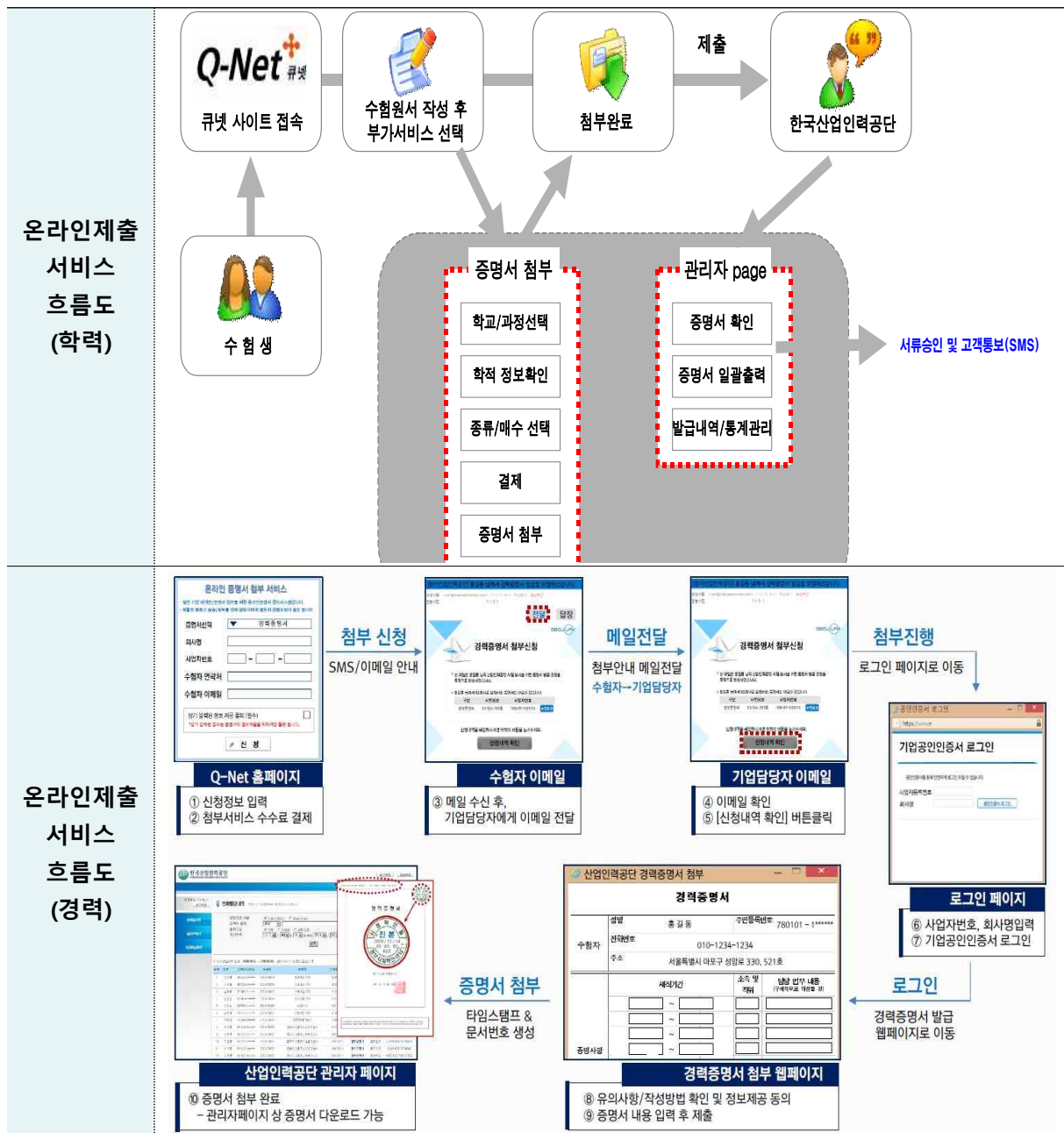
□ 개선방안

- 사실확인서 상 입증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관련 내용을 입증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명확화
 - 사실확인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입증자 확인제도 개선
-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서류심사 업무매뉴얼」 개정

5 온라인서비스 이용 시 불필요한 동일 서류 중복 제출 제한

□ 현황

- 국가기술자격 중 학력 또는 경력 등 응시자격 제한이 있는 시험을 응시하고자 하는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등 서류 제출 필요
- 한국산업인력공단과 협약이 체결된 학교 또는 기업 인사담당자와 협의된 경우에 한해 온라인 서류제출 가능



□ 문제점

- 재학증명서 등 관련서류 제출을 위해 온라인 제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결제 후 취소처리가 불가하고 그에 따른 환불 또한 불가
- 특히 동일한 서류를 중복 제출한 경우에도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여 이에 대한 민원 발생

- 응시자격 온라인제출서비스 관련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중 1개만 제출해도 되는데 **모르고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를 이중으로 제출했는데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함.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서류심사 매뉴얼 내 상담사례 일부 발췌)*
- 정보기사 1차 필기시험 원서 접수 후 응시자격 서류 온라인 제출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코로나로 인해 시험이 취소되어 원서 접수비가 환불될 예정임. 그런데 온라인 제출서비스를 이용한 수수료는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함.**
(’20. 4. 국민신문고 민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큐넷에서 정보처리기사를 접수하고 응시자격제출서류인 졸업증명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함. 개인 사정상 **정보처리기사 접수를 취소해서 응시료는 환불 받았는데, 졸업증명서 제출에 대한 환불은 받지 못함.**
(’20. 8. 국민신문고 민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국가기술자격 신청 시 **경력증명 온라인 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결제를** 했는데, 경력증명이 필요한 회사 담당자에게 일일이 연락하여 온라인 증명을 받는 시스템인 걸 알고 **이용하기가 불편하여 취소 요청을 하였으나, 결제 취소가 불가능**하다고 함. *(’20. 3. 국민신문고 민원, 한국산업인력공단)*

□ 개선방안

- 동일 서류 중복 제출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온라인제출서비스’ 시스템 개선
- ⇒ 「응시자격 온라인제출서비스」 시스템(Q-net) 개선

IV. 조치사항 및 기한

□ 권고 대상기관 : 16개 중앙행정기관 및 한국산업인력공단

□ 세부과제별 조치사항

① 1차, 2차 등으로 나누어진 시험의 경우 응시수수료 통합 징수 개선

조치사항	소관기관
▶ 1, 2차 등 차수별로 시험이 구분되어 있는 경우 응시수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지 않고 차수별로 구분하여 징수 ※ 다만 1차 시험 합격률이 매우 높아 대다수 응시생이 2차 시험에 응시하는 등 분리 징수의 실익이 낮은 경우, 1차 시험 미통과자에게 2차 시험 비용 환불을 조건으로 통합 징수 유지 가능 ⇒ 해당 자격시험별 응시수수료관련 법령 등 규정 개정	10개 중앙행정기관 (21개 자격시험)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기획재정부, 국세청 세무사
	기획재정부, 관세청 관세사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관리사, 호텔경영사, 국내여행안내사, 호텔서비스사,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보건복지부 치과의사전문의자격, 한의사전문의자격, 전문의 자격, 의지·보조기기사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해양수산부 도선사, 감정사, 검량사, 검수사
	경찰청 경비지도사
	소방청 소방안전교육사

②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

조치사항	소관기관
▶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도록 사후 환불제도 도입 ⇒ 해당 자격시험별 응시수수료 환불관련 법령, 시행계획, 공고문 등에 반영	13개 중앙행정기관(37개 자격시험)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취급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사면허, 핵원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핵원료물질취급자면허
	법무부 변호사
	문화체육관광부 무대예술전문인, 국외여행인솔자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 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
	보건복지부 치과의사전문의자격, 전문의, 전문간호사
	국토교통부 건축사, 택시운전자격, 건축물 에너지평가사
	해양수산부 도선사, 항해사 및 기관사·운항사·통신사 1·2급, 항해사 및 기관사·운항사·통신사 3·4급, 항해사 및 기관사 5·6급, 소형선박조종사, 전자기관사,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의료관리자
	경찰청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강사,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검정원, 자동차 운전면허
	산림청 나무의사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③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자격 서류심사의 객관성 확보

조치사항	소관기관
- 직무분야별 주요 업무내용 및 서류심사 프로세스 수립 등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마련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서류심사 업무매뉴얼」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
- 응시자격 서류심사에서 자격 미달로 판단된 경우 심사결과에 불복한 수험자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 마련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서류심사 업무매뉴얼」 개정	

④ 국가기술자격 응시를 위한 경력증명 시 입증자 확인제도 개선

조치사항	소관기관
- 사실확인서 상 입증자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관련 내용을 입증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 명확화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서류심사 업무매뉴얼」 개정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실확인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입증자 확인제도 개선 ⇒ 「국가기술자격 응시자격 서류심사 업무매뉴얼」 개정	

⑤ 온라인서비스 이용 시 불필요한 동일 서류 중복 제출 제한

조치사항	소관기관
- 동일 서류 중복 제출 등 불필요한 서류 제출을 제한 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 온라인제출서비스' 시스템 개선 ⇒ 「응시자격 온라인제출서비스 시스템」 (Q-net) 개선	한국산업인력공단

□ **조치기한** : '21. 10월

※ 법무사자격 소관 기관인 법원행정처로 제도개선 권고내용 별도 송부 예정

연 번	소관 부처	자격명	관련법령	응시수수료 징수방법 ¹⁾	사후 환불제도 ²⁾
1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분리	x
2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사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 관한법률	분리	o
3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면허	원자력안전법	단일	x
4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원자력안전법	단일	x
5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성취급감독자면허	원자력안전법	단일	x
6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자력안전법	통합	x
7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로조종사면허	원자력안전법	통합	x
8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원료물질취급감독자면허	원자력안전법	단일	x
9	원자력안전위원회	핵원료물질취급자면허	원자력안전법	단일	x
10	기획재정부 (국세청)	세무사	세무사법	통합	o
11	기획재정부 (국세청)	외국세무자문사	세무사법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사 (항공무선통신사)	전파법	분리	o
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아마추어무선기사	전파법	단일	o
14	교육부	보건교사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15	교육부	사서교사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16	교육부	실기교사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17	교육부	영양교사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18	교육부	전문상담교사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19	교육부	정교사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20	교육부	교감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21	교육부	교장	초·중등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22	교육부	원감	유아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23	교육부	원장	유아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24	교육부	준교사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자격검정령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연 번	소관 부처	자격명	관련법령	응시수수료 징수방법 ¹⁾	사후 환불제도 ²⁾
25	교육부	평생교육사	평생교육법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26	법무부	변호사	변호사법, 변호사시험법	단일	x
27	법원행정처	법무사	법무사법, 법무사규칙	통합	x
28	국방부	군항공교통관제사	군용항공기운용등에관한법률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29	국방부	헬기정비사	군인사법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30	국방부	심해잠수사	군인사법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31	국방부	항공장구관리사	군인사법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32	국방부	수중발파사	군인사법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33	국방부	폭발물처리사	군인사법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34	국방부	국방사업관리사	군인사법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35	행정안전부	행정사	행정사법	분리	o
36	문화체육관광부	경주선수(경륜)	경륜경정법	단일	해당없음
37	문화체육관광부	경주심판(경륜)	경륜경정법	단일	해당없음
38	문화체육관광부	무대예술전문인	공연법	분리	x
3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통역안내사	관광진흥법	통합	o
40	문화체육관광부	호텔관리사	관광진흥법	통합	o
41	문화체육관광부	호텔경영사	관광진흥법	통합	o
42	문화체육관광부	국내여행안내사	관광진흥법	통합	o
43	문화체육관광부	국외여행인솔자	관광진흥법	단일	x
44	문화체육관광부	호텔서비스사	관광진흥법	통합	o
45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지도자	국민체육진흥법	분리	o
4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어교육능력검정	국어기본법	통합	o
47	문화체육관광부	사서	도서관법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48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박물관및 미술관진흥법	단일	o
4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사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50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검사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51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분리	o
52	농림축산식품부	경매사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	분리	o
53	농림축산식품부	수의사	수의사법	단일	x
54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인공수정사	축산법	분리	o
55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품질평가사	축산법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56	농림축산식품부	말조련사	말산업육성법	분리	x
57	농림축산식품부	장제사	말산업육성법	분리	x

연 번	소관 부처	자격명	관련법령	응시수수료 징수방법 ¹⁾	사후 환불제도 ²⁾
58	농림축산식품부	재활승마지도사	말산업육성법	분리	x
59	농림축산식품부	손해평가사	농어업재해보험법	분리	o
60	농림축산식품부	도시농업관리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61	산업통상자원부	유통관리사	유통산업발전법	단일	o
62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의료법	단일	o
63	보건복지부	보건교육사	국민건강증진법	단일	o
64	보건복지부	안마사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접골사·침사·구사·안마사 자격시험규정, 의료법,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65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업법	단일	o
66	보건복지부	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단일	o
67	보건복지부	임상영양사	국민영양관리법	단일	o
68	보건복지부	한약사	약사법	단일	o
69	보건복지부	약사	약사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단일	o
70	보건복지부	한약조제사	약사법	단일	o
71	보건복지부	위생사	공중위생관리법	단일	o
72	보건복지부	안경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단일	o
73	보건복지부	임상병리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단일	o
74	보건복지부	방사선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단일	o
75	보건복지부	물리치료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단일	o
76	보건복지부	작업치료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단일	o
77	보건복지부	치과기공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단일	o
78	보건복지부	치과위생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단일	o
79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단일	o
80	보건복지부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에관한법률	단일	o
81	보건복지부	간호사	의료법	단일	o
82	보건복지부	의사	의료법	분리	o
83	보건복지부	조산사	의료법	단일	o
84	보건복지부	치과의사	의료법	단일	o
85	보건복지부	치과의사전문의자격	의료법	통합	x
86	보건복지부	한 의사	의료법	단일	o

연 번	소관 부처	자격명	관련법령	응시수수료 징수방법 ¹⁾	사후 환불제도 ²⁾
87	보건복지부	한의사전문의학자	한의사전문의학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통합	○
88	보건복지부	의지·보조기기사	장애인 복지법	통합	○
89	보건복지부	전문의자격	의료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통합	x
90	보건복지부	전문간호사	의료법,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분리	x
9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전문요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92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93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94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원장	영유아보육법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95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영유아보육법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96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노인복지법	단일	○
97	보건복지부	언어재활사	장애인복지법	단일	○
98	보건복지부	장례지도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9조의2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99	보건복지부	장애인재활상담사	장애인복지법	단일	○
100	환경부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수도법	분리	○
101	환경부	환경측정분석사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 관한법률	분리	○
102	환경부	사회환경 교육지도사	환경교육진흥법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103	환경부	환경영향 평가사	환경영향평가법	분리	○
104	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법	분리	○
105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106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분리	○
107	고용노동부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보건법	분리	○
108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기본법	분리	○
109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사	청소년기본법	단일	○
110	국토교통부	건축사	건축사법	단일	x
111	국토교통부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분리	○
112	국토교통부	주택관리사보	공동주택관리법	분리	○

연 번	소관 부처	자격명	관련법령	응시수수료 징수방법 ¹⁾	사후 환불제도 ²⁾
113	국토교통부	물류관리사	물류정책기본법	단일	○
114	국토교통부	감정평가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통합	○
115	국토교통부	택시운전자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단일	x
116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관리자	교통안전법	단일	○
117	국토교통부	운송용조종사	항공안전법	분리	○
118	국토교통부	사업용조종사	항공안전법	분리	○
119	국토교통부	자가용조종사	항공안전법	분리	○
120	국토교통부	부조종사	항공안전법	분리	○
121	국토교통부	항공사	항공안전법	분리	○
122	국토교통부	항공기관사	항공안전법	분리	○
123	국토교통부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안전법	분리	○
124	국토교통부	항공정비사	항공안전법	분리	○
125	국토교통부	운항관리사	항공안전법	분리	○
126	국토교통부	경량항공기조종사	항공안전법	분리	○
127	국토교통부	철도차량운전면허	철도안전법	분리	○
128	국토교통부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철도안전법	분리	○
129	국토교통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철도안전법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130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안전법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131	국토교통부	화물운송종사자격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단일	해당없음
132	국토교통부	건축물에너지평가사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분리	x
133	국토교통부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	항공안전법	분리	○
134	국토교통부	버스운전 자격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단일	해당없음
135	해양수산부	도선사	도선법	통합	x
136	해양수산부	구명정조종사	선원법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137	해양수산부	항해사 및 기관사 1·2급	선박직원법	분리	x
138	해양수산부	항해사 및 기관사 3·4급	선박직원법	단일	x
139	해양수산부	항해사 및 기관사 5·6급	선박직원법	단일	x
140	해양수산부	소형선박조종사	선박직원법	단일	x
141	해양수산부	전자기관사	선박직원법	단일	x
142	해양수산부	수면비행선박조종사	선박직원법	단일	x
143	해양수산부	의료관리자	선원법	단일	x
144	해양수산부	감정사	항만운송사업법	통합	○

연 번	소관 부처	자격명	관련법령	응시수수료 징수방법 ¹⁾	사후 환불제도 ²⁾
145	해양수산부	검량사	항만운송사업법	통합	○
146	해양수산부	검수사	항만운송사업법	통합	○
147	해양수산부	수산물질병관리사	수산물질병 관리법	단일	○
148	해양수산부	수산물품질관리사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분리	○
149	해양수산부	산지경매사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분리	○
150	기획재정부(관세청)	보세사	관세법	단일	○
151	기획재정부(관세청)	관세사	관세사법	통합	○
152	경찰청	경비지도사	경비업법	통합	○
153	경찰청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강사	도로교통법	분리	x
154	경찰청	자동차운전전문학원 기능감정원	도로교통법	분리	x
155	경찰청	자동차 운전면허	도로교통법	분리	x
156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술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분리	○
157	문화재청	문화재수리기능자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	단일	○
158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159	산림청	산림기술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160	산림청	목구조기술자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161	산림청	산림교육전문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162	산림청	나무의사	산림보호법	분리	x
163	산림청	목재교육전문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164	산림청	수목치료기술자	산림보호법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165	중소벤처기업부	경영지도사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분리	○
166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지도사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분리	○
167	특허청	변리사	변리사법	분리	○
168	소방청	소방안전교육사	소방기본법	통합	○
169	소방청	소방시설관리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분리	○
170	소방청	화재조사관	소방기본법	수수료 없음	해당없음
171	소방청	소방안전관리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분리	x
172	해양경찰청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레저안전법	분리	x

연 번	소관 부처	자격명	관련법령	응시수수료 징수방법 ¹⁾	사후 환불제도 ²⁾
173	해양경찰청	수상구조사	수상에서의수색·구조등에 관한법률	단일	x
174	보건복지부	보조공학사	장애인보조기기법	단일	o
175	식품의약품안전처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화장품법	단일	x

- 1) **(단일)** 1, 2차 구분 없이 한차례 시험으로 이루어져 한 번의 응시수수료 징수
(분리) 1, 2차 등 차수 구분이 있는 시험 중 1차, 2차 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구분하여 차수별로 따로 징수
(통합) 1, 2차 등 차수 구분이 있는 시험 중 1차, 2차 시험에 대한 응시수수료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한꺼번에 징수
- 2) **사후 환불제도**는 시험 당일 불가피한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응시
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해주는 제도로, '해당없음'은 응시수수료가 없거나 시험 당일
참석자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어 응시수수료 반환이 필요 없는
경우를 말함

정 본 입 니 다 .

2020. 9. 23.

국 민 권 의 위 원 회



A C R C